

2026학년도 1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(안)

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 현장실습 기관(기업) 간의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실습 기관에서 실무교육 및 실습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학기 중 전공(또는 교양) 교과목 학점을 인정받는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고자 함.

1. 운영 개요

□ 운영 근거

-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(교육부 고시 제2022-1호)
- 「고려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시행세칙」

□ 운영 목적

- 학생은 진로탐색, 취·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경험 및 기초 사무(연구)역량 배양
- 기관은 인턴 고용에 따른 인력 활용 효율화 및 우수인재 조기 확보 기회 창출
- 학교는 산업(사회) 현장의 요구사항 및 변화를 학교 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

2. 참여 요건

□ 학생

- 2026학년도 1학기 기준 4학기 이상 이수자(미취업자) 참여 가능
- 편입생은 본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
- 졸업유예자(수강유예자) 및 초과학기생 참여 가능 (단, 「장학금 지급 규정」 제11조4항(신청및지급)에 따라 현장실습 장학금 지급 불가)
- 휴학생 및 수료자 참여 불가

□ 실습기관

-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가족회사 및 그 외 현장실습학기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기업 등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시험장 및 연구소

- 법령에 의거 설립된 경제단체 및 사업주단체(비영리법인), 기타 비영리법인 및 특수공법인
- 현장실습 운영계획을 수립하며, 현장교육 담당자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(기업)
- 학생의 전공과 관련이 있으며, 전공 관련 직무의 실무 부여가 가능한 기관(기업)
- 학생의 보건 위생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(기업)
- 현장실습학기제에 필요한 시설 설비 물품 등을 갖추고 제공할 수 있는 기관(기업)

참여 불가 실습기관

- 실습기관 내에서 실습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
 - ※ 프로젝트성 과제를 수행하며 학내 동아리방, 강의실에서 실습을 진행하는 경우
- 4대보험 체납 사업장
-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
- 사업장내 성희롱 등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
- 기타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,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
 - 소비, 향락업체,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업체 등
 - 계절적, 일시적 인력 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 및 다단계 판매업체 등
 - 학생이 소속된 대학 및 산학협력단
 -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정상적인 실습이 어려운 사업장

3. 운영 세부사항

□ 운영 기간: **2026학년도 1학기 (2026.3.3.(화)~2026.6.22.(월))**

□ 운영 형태: **현장실습학기제 (표준)**

-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운영

유형	구성	월 실습지원비
표준 현장실습학기제	직무 관련 교육(25% 이하) + 직무수행 실습	1,617,660원 이상

□ 운영 요건

○ 실습시간

- 주 40시간(1일 8시간 기준) 기준 전일제로 1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운영하여야 함(단, 연차(휴가), 법정공휴일 등은 실습시간(실제 출석일)으로 인정하지 않음)

- 센터와 학생의 사전 동의를 받아 1주간 최대 5시간 연장실습이 가능하나 연장근무 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함(당해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의 100분의 150 이상)
- 단, 주말·공휴일 근무 불가하며 연장근무 수당을 대체 휴무 형식으로 처리 불가
- 22시~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실습(근무) 불가
- 법정공휴일 및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보장
- 1개월 이상의 실습인 경우에 한하여, 1개월 만근(개근) 시 1개의 유급휴일 발생
 - ※ 휴일 사용 시 실습학생은 실습기관과 사전 협의 후 사용하며 실제 출석일 제외
- 기타 유급휴일: 예비군 훈련 등의 공적 의무 수행일,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, 사망 등의 경조사일,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일

○ 실습장소

- 운영계획서에 기재한 실습기관(기업)의 사업장
- 국가재난의 상황, 특별한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택근무 불가(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총 실습기간의 25%까지 가능하며 반드시 현장실습지원센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)

○ 직무 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

- 전체 실습기간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하여야 함(교육은 실습 중 업무 관련 멘토링 및 피드백 모두 포함하는 개념)

○ 실습 중도 포기자에 대한 처리

- 중도 포기는 반드시 실습기관과 실습생의 협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학교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함
- 중도포기 시 학점 인정 불가(F처리) 및 학교의 모든 지원금(장학금 등)은 지급 불가(단,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시행세칙 제7장 제24조 4항에 의거하여 국가재난 발생 또는 질병 및 상해로 인하여 실습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, 일부 인정 가능)

○ 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준

-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,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·선발하는 경우
-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(조기취업 포함), 근로, 인턴,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,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
-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
- 수업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
-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
-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
-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, 서식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

□ 학점인정 및 성적평가

- 현장실습 교과목 종류

개설 주체	이수 구분	교과목명	인정 학점
학과(전공)	전공선택	학과(전공)별 상이	3 ~ 15학점 (실제 출석일에 따라 상이)
크림슨산학융합원	전공선택	KUS전공특화현장실습 I ~ VI	
세종교양교육원	선택교양	산학연계현장실습 I ~ V	

※ KUS 전공특화 현장실습은 학과 코드웨어로 전공 학점 인정(코드웨어 동의 학과에 한함)

- 인정 학점 기준 이수 조건
 - 현장실습 교과목으로 취득할 수 있는 최대 학점: **18학점(전공+교양)**
 - 학기 당 최대 이수 가능 학점: **정규학기 15학점 / 계절학기 6학점**

인정 학점	이수 조건 (실제 출석일)
3학점	1개월 이상, 출석일: 20일 이상
6학점	출석일: 40일 이상
9학점	출석일: 60일 이상
12학점, 15학점	15주 이상, 출석일: 70일 이상

※ 실습기관이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경우 예시

※ **현장실습학기제 기간이 1개월 이상, 실제 출석일 2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학점 인정(3학점 기준)**

※ 현장실습 참여 기간 및 실습 시간 내 일반 오프라인 교과목 및 그 외 프로그램 동시 수강 불가

- 성적평가
 - 성적평가 방식: P/F 평가
 - 성적평가 서류: 출석부, 기관평가표, 현장실습 보고서(주간보고서, 결과보고서)
 - 실습 종료 후 기관평가표 총점이 60점 미만일 경우 ‘F’ 처리됨

- 성적 공시 기간

실습 학기	실습 기간	성적 공시 기간
1학기	3 ~ 6월	7월 20일 이내
여름계절학기	7 ~ 8월	9월 20일 이내
2학기	9 ~ 12월	1월 20일 이내
겨울계절학기	1 ~ 2월	3월 20일 이내

4. 학생 지원 사항

□ 실습지원비 지급

○ 지급 내용

유형	지급 주체	지급 기준	실습시간	직무교육시간
표준 현장실습학기제	실습기관	월 1,617,660원 이상 지급 (직무교육시간 25% 이내에 따라 월 최저임금의 75%이상 지급)	75% 이상	25% 이내

- 교육시간은 최대 25%까지 배정 가능하며, 교육시간 배정 비율에 따라 실습지원비 지급액을 달리 할 수 있음
 - 예시) 교육시간 25% 배정 시 최저임금의 75%를 지급
- ※ 실습지원비 산출방식은 다음 페이지 [참고] 실습지원비 산출 방법 참고
- 실습기관(기업)은 **실습생(학생)의 계좌로 실습지원비를 직접 지급**
- 실습지원비는 실습기관(기업)이 학생에게 직접 금전으로 지급해야 하며, 학교를 통한 장학금 형태로 지급할 수 없고, 현물(식사, 기숙사, 통근버스 등) 제공은 실습지원비로 인정하지 않음
- 지급시기: 당월 또는 익월 중 지급하되 지급일자 등 세부사항은 실습기관 내규에 따름
- 회계처리: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**실습지원비는 소득신고 및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 제외 없이 학생에게 지급**(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153, 2021.3.9.) 단, 4대보험 가입 기업의 경우 근로소득 대상이며 세후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학생에게 반드시 사전 안내해야 함

[참고] 실습지원비 산출 방법(월 단위 **표준 현장실습학기제**)

<산출 방법 - 직무 교육시간 25% 운영 기준>

구분	산식	산출내역
월 단위 실습지원비	(시간급 최저임금액 × 월 단위 실습시간 수 ×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) 이상	$10,320 \times 209 \times 0.75 = 1,617,660$ 원
주 단위 실습지원비	(시간급 최저임금액 × 주 단위 실습시간 수 ×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) 이상	$10,320 \times 48 \times 0.75 = 371,520$ 원
일 단위 실습지원비 (월/주 단위 외 잔여 날)	주 단위 실습지원비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 / 주 단위 실습지원비 ÷ 5 (주 5일제 기준)	$371,520 \div 5 = 74,304$ 원
월 단위 실습시간 수	(주 단위 실습시간 수 ÷ 7) × (365 ÷ 12) 소수점 이하 올림 값	$(48 \div 7) \times (365 \div 12) = 209$ 시간
주 단위 실습시간 수	일 실습시간 수 × 주 실습일수 +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	$8 \text{시간} \times 5 \text{일} + 8 \text{시간} = 48$ 시간
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	(1 -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)의 소수점 둘째자리 값(셋째자리 올림 값)	$1 - 0.25 = 0.75$

□ 보험 가입

○ 실습기관

- 실습기관(기업)은 선발한 실습생에 대하여 **산업재해보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**하여야 함
- 「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」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-69호)에 따라 대학 교육과정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의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 적용 대상
- 산재보험법 제123조(현장실습생 특례 적용) 규정의 의미: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됨을 고려하여 노동관계 및 사회보장 법령 중 생명·안전과 직결되는 산재보험법에 한해서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의제하여 산재보험 가입 의무 부여

○ 대학

- 대학은 실습기관의 산재보험 외 현장실습 상해보험을 별도 가입함

□ 현장실습 장학금 지원

구분	장학금
지급 주체 (재원)	대학(교비)
지급 대상	실습기관으로부터 월 기준, 최저임금의 <u>75% 이상 100% 미만</u> 실습지원비를 지급 받는 학생
지급 제외	초과학기생은 「장학금 지급 규정」 제11조4항(신청및지급)에 따라 현장실습 장학금 지급 제외
지급 금액	당해연도 월 최저임금 100%와 해당 학생의 실습지원비 차액 지원
증빙 서류	실습 종료 이후 결과 서류 (주간 및 결과보고서, 기관평가서 등)

※ 중도 포기 시 장학금 지급 불가하며, 실습기간 종료 후 교과목 이수자에 한해 지급함

※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

5. 실습기관 지원 사항

□ 실습지원비 환급

- 환급 근거: 「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」(교육부 고시) 제30조5항
- 환급 대상: 실습기관에서 「최저임금법 시행령」 제5조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는 실습기관(기업)
- 환급 기준: 「최저임금법 시행령」 제5조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를 표준화된 지급 수준으로 함
- 환급 시기: 실습 종료 후 실습기관(기업)의 신청에 따라 지급함
 - 필요 서류: 실습지원비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법인통장사본, 실습지원비 지급내역서

□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

- 내 용: 현장실습, 산업체 과제수행 등 참여 실적에 따라 ‘대학’ 과 ‘기업’ 에 마일리지 를 부여하고, 산학협력관련 지원사업 등에 적립한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
- 적립 대상
 - 대학생 **표준 현장실습학기제** 참여 (실습지원비 1만원당 1마일리지)
 - **표준 현장실습학기제** 이수 학생 채용 (이수학생 채용 1명당 300마일리지)

6. 현장실습 참여 신청 및 실습생 선발

구분	기관	학생
신청기간	2025.12.29.(월) ~ 2026.2.6.(금)	2026.1.5.(월) ~ 2026.2.13.(금)
신청방법	고려대학교 현장실습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신청 (https://coop.korea.ac.kr/) ※실습기관에 따라 별도의 자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	
제출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온라인시스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운영계획서 및 직무기술서 등록 ※ 신규 기관은 회원가입 및 승인 절차 후 운영계획서 등록 가능 ※ [붙임] 운영계획서 작성 예시 참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온라인시스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력서, 자기소개서, 서약서, 개인정보 동의서 등록 - 현장실습 참여 신청서(본인 및 학과 담당자 서명 후) 업로드
선발방법	1차 서류 → 2차 면접(유선/ZOOM/대면) → 최종 선발 ※기관에 따라 면접 생략할 수 있음	

7. 운영 일정

구분	기간	내용	주체	
실습 전	기관 모집 및 신청	2025.12.29.(월)~2026.2.6.(금)	· 대학: 기관 모집 안내(대외문서 발송 등) · 기관: 현장실습 온라인시스템 로그인 후 운영계획서 및 직무기술서 등록	기관, 대학
	학생 모집 및 선발	2026.1.5.(월)~2026.2.13.(금)	· 대학: 현장실습 온라인시스템 공지 및 SNS 게시, 홍보 문자 발송 · 학생: 현장실습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지원 (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록) · 기관: 일정에 따른 현장실습생 선발	학생, 기관, 대학
	수강신청	2026.2.23.(월)	· 대학: 현장실습 대상자는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일괄 진행 예정 (학생 수강신청 불필요)	학생, 대학
	등록금 납부	2026.2.23.(월)~2026.2.27.(금)	※ 등록금 납부도 수강신청 이후 별도 안내 예정 (현장실습 단독방 개설 예정)	
	사전교육	2026.2.23.(월)~2026.2.27.(금)	· 현장실습 안내 및 안전 교육 이수 · 2026년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※ 사전교육 미이수 시 현장실습 참여 불가	학생, 대학
	3자 협약 체결		· 표준 현장실습 협약서 작성 및 발송 (우편 또는 온라인시스템상 협약 체결)	학생, 기관, 대학
보험가입	· 산재(기관) 및 상해(대학) 보험 가입 ※ 산재보험은 실습 시작 후 7일 이내 가입		기관, 대학	
실습 진행	실습기간	2026.3.3.(화)~2026.6.22.(월)	· 학생: 주간보고서 작성 · 기관: 출석부 작성 (출석/결석/휴가 등) · 기관/학생: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제출	학생, 기관
	중간점검	2026.4.13.(월)~2026.5.15.(금)	· 학생: [온라인시스템] 중간점검서 작성 · 대학: 실습기관 방문 또는 유선 점검 실시	학생, 대학
실습 후	결과서류 제출	2026.6.23.(화)~2026.6.28.(일)	· 기관: [온라인시스템] - 출석부, 평가표, 설문조사서 · 학생: [온라인시스템, 메일] - 주간보고서, 결과보고서, 설문조사서 학점인정원 제출 - 현장실습 후기 수기 및 UCC 메일 제출	학생, 기관
	실습지원비 환급신청	2026년 7월 중	· 기관: [세종현장실습지원센터 이메일] - 산학연계현장실습 실습지원비 신청서 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- 법인통장 사본 1부 - 실습지원비 지급내역서	기관
	현장실습 성적처리	2026년 7월 중	· 학과 및 센터에서 실시	학과, 센터

※ 상기 일정은 센터 및 기관의 운영 사정 또는 학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